

법관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1. 의결주문

법관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개정이유

- 법관인사 이원화의 취지와 시행경과를 고려하여 지방법원 등에서 충분한 경력을 쌓은 법관이 고등법원 판사로 보임된 경우에는 고등법원 부의 재판장이 될 수 있는 자격 요건 중 고등법원 근무요건을 완화함으로써 법관인사 이원화를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고등법원에서 실질적 대등합의부 구성을 활성화하여 보다 충실한 재판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함

3. 주요내용

- 법조경력 22년 이상인 고등법원 판사도 고등법원 부의 재판장이 될 수 있도록 하고, 법조경력 산정 기준일을 기존 재판장 자격 요건과 통일적으로 규정함(안 제10조제3항)

4. 법관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붙임과 같음

5. 신·구조문대비표

붙임과 같음

법관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법관인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3항 중 “법조경력 20년 이상으로서 제1항의 고등법원 판사로 보임된 이후 3년 이상 근무한 판사(당해 연도 2월 말일을 기준으로 한다)” 를 “제1항의 고등법원 판사로 보임된 판사 중 법조경력 22년 이상인 판사(당해 연도 2월 말일을 기준으로 한다. 이하 같다) 또는 법조경력 20년 이상으로서 제1항의 고등법원 판사로 보임된 이후 3년 이상 근무한 판사” 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2025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0조(고등법원 판사의 보임 등)</p> <p>① ~ ② (생략)</p> <p>③ <u>법조경력 20년 이상으로서 제1항의 고등법원 판사로 보임된 이후 3년 이상 근무한 판사(당해 연도 2월 말일을 기준으로 한다)는 고등법원 부의 재판장이 될 수 있다.</u></p>	<p>제10조(고등법원 판사의 보임 등)</p> <p>① ~ 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<u>제1항의 고등법원 판사로 보임된 판사 중 법조경력 22년 이상인 판사(당해 연도 2월 말일을 기준으로 한다. 이하 같다) 또는 법조경력 20년 이상으로서 제1항의 고등법원 판사로 보임된 이후 3년 이상 근무한 판사-----</u> -----.</p>

<의안 소관 부서명>

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	
연락처	(02) 3480 - 1775